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様式第19号]

死亡届

(년 월 일)
(年 月 日)

※ 届出書は、裏面の作成方法を参考に記入し、選択項目には「○」をつけてください。

① 사망자 ① 死亡者	성명 氏名	*한글 *ハングル	(성) / (명) (氏) / (名)	성별 性別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한자 漢字	(성) / (명) (氏) / (名)	(1)남 (2)여 (1)男 (2)女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소 *住所				세대주·관계 世帯主との関係	의 の
	*사망 일시 *死亡した日時	년 월 일 시 분 (사망지 시각: 24시각제로 기재) 年 月 日 時 分 (死亡地の時刻: 24時間制で記入)				
*사망 장소 *死亡した場所	장소 場所					
	구분 区分	(1) 주택 (2) 의료기관(병원, 요양병원 등) (1) 住宅 (2) 医療機関(病院、療養病院等) (3)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양로원, 아동양육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3) 社会福祉施設(介護医療院、老人ホーム、児童保育施設、障がい者グループホーム等) (4)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4) 公共施設(学校、運動場等) (5) 도로 (6)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5) 道路 (6) 商業・サービス施設(商店、ホテル等) (7) 산업장 (8)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7) 事業所 (8) 農場(田畑、畜舎、養殖場等) (9) 병원 이송 중 사망 (9) 病院搬送中に死亡 (10) 기타() (10) その他()				
② 기타 사항 ② その他の事項						
	*성명 *氏名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③ 신고인 ③ 届出人	*자격 *資格	(1)동거친족 (2)비동거친족 (3)동거자 (1)同居親族 (2)非同居親族 (3)同居者		*관계 *關係	
		(4)기타(보호시설장/사망장소관리자 등) (4) その他 (保護施設長/死亡した場所の管理者等)			
	주소 住所			*휴대전화번호 등 *携帯電話番号等	-
				이메일 電子メール アドレス	
④ 제출인 ④ 提出人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他人の署名又は印章を盗用して虚偽の届出書を提出したり、虚偽の届出を行い、家族関係登録簿に事実と異なる内容を記載させた場合は、**刑法に基づき処罰**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米印(*)の資料は国の統計作成のために統計庁でも収集している資料です。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下記の事項は「統計法」第24条の2に基づき統計庁で実施する人口動向調査です。「統計法」第32条及び第33条に基づき誠実に回答する義務があり、個人の秘密事項は厳重に保護されますので、事実を正確に記入してください。

※ 첨부서류 및 사망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添付書類及び死亡者の国籍は国の統計作成のために統計庁でも収集している資料です。

인구동향조사 人口動向調査	
㉠ 최종졸업학교 イ. 最終學歷	(1) 학력 없음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이상 (1) 學歷なし (2) 小学校 (3) 中学校 (4) 高校 (5) 大学 (6) 大学院以上
㉡ 혼인 상태 ロ. 婚姻状態	(1) 미혼 (2) 배우자 있음 (3) 이혼 (4) 사별 (1) 未婚 (2) 配偶者あり (3) 離婚 (4) 死別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下記の事項は届出人が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

읍면동접수 邑・面・洞で受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家族関係登録官署に送付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家族関係登録官署で受付及び処理
	년 월 일 (인) 年 月 日 (印)	

작성방법 作成方法

- ※ 사망신고서는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死亡届は1部を記入して提出してください。

① 사망자 ① 死亡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기준지: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登録基準地: 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その国籍を記入してください。 • 주민등록번호: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住民登録番号: 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又は生年月日)を記入してください。 • 사망일시: <예시>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밤 12시 30분(×) → 다음날 0시 30분(○) • 死亡した時間: <例> 午後 2時30分(×) → 14時30分(○)、夜12時30分(×) → 翌日 0時30分(○)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 기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 韓国の国民が外国で死亡した場合、現地の死亡時刻を西暦及び太陽暦で記入し、サマータイムの実施期間中に死亡した場合、死亡地の時刻の横に「(サマータイム適用)」と記入してください。 • 사망 장소 구분: (1) 주택은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 • 死亡した場所の区分: (1) 住宅には、死亡場所が死亡者の自宅又は父母、親戚等の家で死亡した場合を含む (10)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10) その他は例のケースのほかに飛行機、船舶、列車等その他の場所に該当する場合 • 사망 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 死亡した場所については最小行政区域の名称(市・区の「洞」、邑・面の「里」)又は道路名住所の「道路名」までのみ記入しても構いません。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미첨부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死亡診断書(死体検案書)を添付しない場合、その理由等家族関係登録簿へ明確に記録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入してください。
② 기타 사항 ② その他の事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란에는 해당항목에 ‘영표(○)’로 표시하되 (4) 기타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 資格欄には当該項目に「○」をつけ(4)その他は死亡した場所を管理する者を含みます。
③ 신고인 ③ 届出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 提出者(届出人が記入した届出書を届出人でない者が提出する場合のみ記載)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受付担当公務員は身分証明書との照合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④ 제출인 ④ 提出者	
<p>※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下記の事項は「統計法」第24条の2に基づき統計庁で実施する人口動向調査です。</p>	
㉔ 최종 졸업 학교 イ. 最終学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의 최종 졸업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 번호에 ‘영표(○)’로 표시를 합니다. • 死亡者の最終学歴は教育部長官が認める全ての正規教育機関を基準にして記入し、各学校における在学(中退)者は最終的に卒業した学校の当該番号に「○」をつけてください。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4)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例> 大学3年在学中(中退) → (4) 高校に「○」をつける

첨부서류 添付書類

1.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1. 死亡者の診断書又は死体検案書1部
2.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아래 중 1부.
2. 死亡事実を証明する書面(診断書又は死体検案書を添付できない場合) 下記のうち1部
 - ①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① 国内又は外国の権限ある機関で発行した死亡事実を証明する書面

- 예시: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정부기록보관소 보존중인 재정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例: 官公署の死亡証明書又は埋葬許可証、真実和解委員会の真相究明決定文、政府記録保管所、財務部の作成した保存中の被収用者の死亡者連名簿、外国の官公署等で発行した当該国の方式によって死亡届を提出した事実を証明する書面
- ②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 ② 軍人が戦闘その他の災難で死亡した場合、部隊長等が死亡事実を確認し、その名義で作成した戦死確認書
- ③ 기타: 증명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1호 별지 양식)
- ③ その他: 証明書(家族関係登録例規第521号別紙様式)
 - 증명인이 동·리·통장일 경우: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証明者が洞・里・統の長の場合: 1名の証明で足り、原則的に洞・里・統の長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書面を添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증명인이 인우인일 경우: 2명 이상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중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証明者が近隣知人の場合: 2名以上の証明が必要となり、証明人の印鑑証明書、住民登録証の写し、運転免許証の写し、旅券の写しのうち1部を添付する必要があります。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 以下の第3項は、家族関係登録官署にて情報システムでその内容が確認できる場合は添付を省略してください。

3.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3. 死亡者の家族関係登録簿の基本証明書 1部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4. 身分を確認できるもの〔家族関係登録例規第600号に基づく〕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 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提出者が出席した場合: 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及び提出人の身分証明書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郵送で提出する場合: 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届出人が成年後見人の場合は、第4項の書類の他に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添付してください。

5.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5. 死亡者が外国人の場合: 国籍を証明する書面(旅券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

※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대한 안내

※ 財産相続の限定承認及び相続放棄について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この案内は死亡届とは関係ない内容です。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詳しい内容は家庭裁判所裁判所(地方裁判所)又は支援する民願室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1. 의의 -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
1. 意義 - 限定承認: 相続人が相続によって得た財産の限度内で相続を承認すること
 - 상속포기: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 相続放棄: 相続財産に属するすべての権利義務の承継を放棄すること
2. 방식 -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2. 方式 - 限定承認: 相続財産一覧を添付し家庭裁判所裁判所に届を提出してください。
 - 상속포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합니다.
 - 相続放棄: 家庭裁判所に相続放棄届を提出してください。
3. 신고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제1항)
3. 届出期間 - 相続開始があったことを知った日から3カ月以内(民法第1019条第1項)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相続人は相続債務が相続財産を超えている事実を重大な過失なしに、相続開始があったことを知った日から3か月以内に知らな
いまま単純承認（民法第1026条第1号及び第2号に基づき単純承認をしたものと見做す場合を含む）をした場合は、その事実を知っ
た日から3か月以内に限定承認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4. 관할 -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관할 법원

4. 管轄 - 相続開始地[被相続人の (最後) 住所地]管轄裁判所